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4회 제1차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2025. 9.

이 진 환 의원

제안 설명서

제안자: 이진환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은 구민의 삶을 저하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관심이 부족합니다.
- 이에 갱년기 증후군의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지원대상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5조에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는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5년 9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제정 조례안은 달서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갱년기 증후군을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이진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5082
----------	----------

발의연월일: 2025. 9. 3.

발 의 자: 이진환 황국주 김정희
박종길 정창근

1. 제안이유

-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4조~제5조)
-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및 제19조
- 나.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심리적·신체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갱년기 증후군 지원대상자는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